

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-292호 (2009.09.21)로 고시된 「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」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지역·지구 등의 지정 등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8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정비구역 명칭 및 내용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

나. 정비구역 해제 내역

○ 정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정비사업 유형	구역명	위 치	면 적	용적률	건폐율	정비구역지정 (고시일)
당초	주 택 재개발	구월삼보	남동구 구월동 1086 번지 일원	14,716.8㎡	240%	25%	인천광역시고시 제2009-292호 (2009.09.21)
변경	해 제						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
다.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서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해제

2. 지형도면 : 따로붙임 지형도면과 같음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(032-440-3443)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(032-453-2803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□ 구월삼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1.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변경)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

- 기 정



- 변 경(해제)



2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- 기 정



- 변 경(해제)

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- 기 정



- 변 경(해제)



4. 주택재개발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

- 기 정



- 변 경(해제)



5. 지형도면고시(변경)도

- 기 정



- 변경(해제)

